

【 10 】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출연월일 : 2005. 9. 23.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2005년 9월 6일 양주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이유

-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05.8.5 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곧바로 양주시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양주시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 한 것임.
- 소급 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양주시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안정성, 양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2. 첨부서류

-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기타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재의요구 지시공문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지시 통보

1. 의정부시 기획예산담당관-5244(2005.9.6)호, 파주시
기획예산과-5042(2005.9.15)호, 포천시 기획감사담당관-6174(2005.8.19)호, 양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5912(2005.9.11), 동두천시 기획감사실-6322(2005.9.20)호, 연천군
기획감사실-4554(2005.9.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거 도에 보고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 또는 법적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불임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오니, 법정기일 내에 재의요구하시고, 그 결과를 「경기도 법제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기개정한 시·군은 금번 재의요구 지시사항을 참고하여 조례개정 내용에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재의요구 지시서 1부.

2 행정자치부 도 재의요구 지시서 공문 1부. 끝.



수신자 고양시장(기획예산담당관), 의정부시장(기획예산담당관), 남양주시장(기획예산과장), 파주시장(기획예산과장), 포천시장(기획감사담당관), 광주광역시 기획감사담당관, 동두천시장(기획감사실장), 가평군수(기획감사실장), 연천군수(기획감사실장)

★ 지방행정청사무감사 실무 세미나

현주자

시행 기획 예산 담당관-6310 (2005.09.21.) 접수 기획 감사 담당 관실-6167 (2005.09.21.)

우 480-764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신곡동800)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850-2116 / 전송 031-850-2119 / 사용자 ID@gg.go.kr / 공개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

1. 재의요구 주문

재의요구 대상시·군의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 또는 법적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의 요구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의요구 대상

- 개정조례안 부칙에 회기수당 소급 적용을 규정한 다음 각 시·군의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상 시·군 :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3. 재의요구 사유

- 법 제32조제2항과 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05.8.5 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 한 것임.

-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끝.



행정자치부



수신자 경기도지사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시통보

1. 법무담당관-9421(2005.9.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에 의거 우리부에 보고된 귀도의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제32조제2항 및 법시행령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의요구대상

○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단서 삭제

나. 재의요구사유

○ 법제32조제2항과 법시행령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05.8.5 법시행령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조정한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경우에도 기타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동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되는 이익은 법적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서기관

자치제도팀장

협조자

시행자치지도팀-1832 (2005.09.20.) 접수법무담당관-@N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 www.mogaha.go.kr

전화 3703-4841 / 전송 3703-5543 / kongbs@mogaha.go.kr / 공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第19條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等) ①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20日 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改正 1994.3.1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期間내에 이유를 붙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붙여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條例와 規則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한다.

⑧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8條 (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4.3.16>

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를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準用한다.<新設 1994.3.16>

第99條 (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4.3.16>

②地方議會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9條 (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1.27>

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④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사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신설 1994.3.16, 1999.8.31, 2005.1.27>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 <신설 1994.3.16>

⑥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사는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 <신설 1994.3.16, 1999.8.31, 2005.1.27>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법 제19조·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삭제 <1995.7.1>